

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신설 2022. 6. 7.>

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(제7조의2 관련)

1. 시설 기준

- 가. 바닥 면적이 150㎡ 이상이고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을 1개 이상 둘 것
- 나.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것

2. 인력 기준

- 가.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둘 것
- 나. 가목의 전임강사는 다음의 사람으로 할 것
 - 1) 대학에서 법학·경제학·경영학 중 한 가지 이상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
 - 2) 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 - 3) 대리점거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
 - 4)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(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)
- 다. 관리직원은 3명 이상 둘 것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

- 가. 교육실적 기준: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공급업자 50개 이상 또는 대리점 100개 이상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·연수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
- 나. 전문성 기준: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실적이 30건 이상일 것

비고: 제1호가목의 강의실은 교육기관 등이 직접 소유하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.